

# 교육·인적자원 관련 직업교육 법제 정비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부교수 나 승 일  
수원대학교 교수 강 인 수  
서울대학교 교수 정 철 영  
서울교육대학교 부교수 허 종 렬  
서울대학교 대학원 마 상 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 강 호

## 목 차

- I. 서론
- II. 직업교육모형 및 법제 정비 원리의 탐색
  - 1.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모형
  - 2. 교육·인적자원 관련 법제정비의 기본원리
- III. 교육·인적자원관련 직업교육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1. 헌법과 교육기본법
  - 2. 초·중등교육법
  - 3. 고등교육법
  - 4. 산업교육진흥법
  - 5.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6. 자격기본법
  - 7. 평생교육법
- IV. 직업교육법제 정비방안
  - 1. 직업교육 법제정비 기본방향
  - 2. 직업교육법제 정비방안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2.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이 논문은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개발비에 의해 수행된 '교육인적자원관련 직업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 I. 서론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로 인해 직업교육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직업기초능력의 강화,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의 이행, 일에 기초한 학습 등의 강조로 산업인력구조 고도화에 대비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21세기의 새로운 직업교육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면서 자국의 교육·훈련 체제 개선에 힘쓰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Vocational Education Act와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Perkins I, II, III 등의 직업교육관련 기본법을 통해 기존의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으로 산재하여 규정된 지원 사항들을 대대적으로 수정, 통·폐합 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총괄하며,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990년대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와 같이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법제를 갖추었다(나승일 외, 1999).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서 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배분·활용개발에 달려있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는 교육부총리제 출범과 함께 인적자원개발회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 일련의 범부처적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부처간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상호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다각적 노력은 최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결실을 보고 있다.

직업교육분야에서는 그 동안 기존 관련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령 제정을 통해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왔다. 대표적인 예로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1999년 ‘평생교육법’ 등이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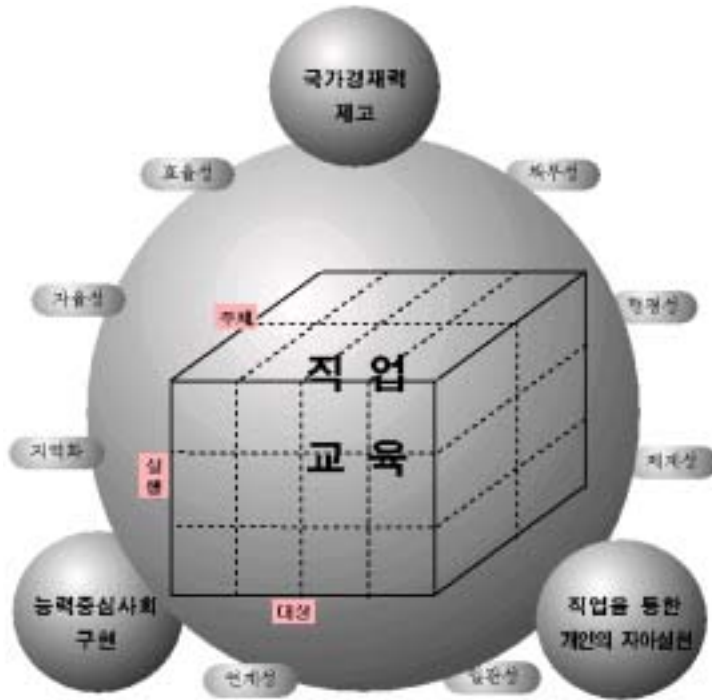
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당시의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최근의 사회변화로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제시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맥락에서 직업교육법제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상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정책들을 지원하는 법제는 어떠한 원칙 하에 정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정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행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제는 체계적인 직업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도로써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신익현 외, 2000; 나승일 외, 1999; 강인수, 2001; 전재경 외, 2001).

따라서 이 연구는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모형을 탐색하고, 교육·인적자원관련 법제정비의 기본원리를 고찰하며, 우리나라 직업교육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직업교육법제정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국내외 관련 문헌 고찰, 주요 선진국의 직업교육법제 동향 및 사례에 대한 비교법제연구, 전문가 협의회 및 공청회 등에 기초하여 타당하고 현실적인 직업교육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 II. 직업교육모형 및 법제 정비 원리의 탐색

### 1.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모형

직업교육모형이란 직업교육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직업교육 실체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적 틀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교육이 지향해야 할 개념, 비전, 원칙, 기본방향 등으로 구성된 개념적 틀을 의미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모형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개념은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적 발달 특성을 위해 제공되는 학습 경험의 총체”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의 비전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직업관련 활동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하는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 ‘능력중심사회의 구현’하는 것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교육의 비전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바탕으로, 책무성·형평성·체계성·일관성·연계성·지역화·자율성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의 기본방향이란 직업교육의 본질적 목표기준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람직하였던 직업교육의 실재를 일반화한 것으로, 직업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과 제의 설정에 있어 지침으로서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직업교육 주체·대상·실행 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기본방향을 구분할 수 있다. 직업교육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직업교육기관과 사회직업교육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주체별 역할의 기본방향은 <표 1>과 같다.

<표 1> 직업교육 주체별 직업교육 기본방향

주체 실행영역	국가(정부)	지방자치단체	학 교 직업교육기관	사 회 직업교육기관
양 성	· 직업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양성의 청사진 제시 ·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특성화된 인력양성 · 직업기초능력 함양	· 평생직업능력개발
활 용	· 개인의 평생 경력관리 지원체제 구축 ·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 직업능력평가인증제도의 체계화		· 진로교육 강화	· 경력관리 강화
인프라	· 국가인적자원개발관리·정책 평가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 직업교육-자격-노동시장의 인 력수요간 연계체제 구축 · 법적·제도적 지원체제 구축	· 정부와의 관계 재정립 · 지역의 직업교육에 관한 행 · 재정적 체계를 정비 · 지역 산업체, 시민단체의 파트너십	· 구성원의 조직운영 참여 유도 ·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조직운영 · 우수한 교육담당 인력확보	

직업교육의 대상은 직업교육이 모두를 위한 평생의 과정이란 측면에서 학교직업교육에서의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나눌 수 있고, 각 대상별 기본방향은 <표 2>와 같다.

<표 2> 직업교육 대상별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대 상 실행영역	유 아	청소년	성 인	노 인
양 성	· 일의 세계에 대한 일반적 이해	· 일의 세계에 대한 일반적 이해 · 직업기초능력 함양 · 특수 직업군에 대한 실제적 경험 제공 · 초임직 수준 기능훈련	· 현직에 종사하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으로 고차적인 훈련·기술·교육 · 생활지도 및 취업정치 · 실직자/취약계층의 취업 능력 개발	· 고령자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및 사회 적응 교육 · 노인 정보화 교육
활 용	-	· 생애개발을 위한 생활지도	· 연속적인 생애개발을 위한 생애지도 · 취업정치 · 취약계층의 특수한 직업적 요구 충족을 위한 훈련상담 및 취업정치	· 퇴직 예정자 인력은행 구축
인프라	·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리 및 정책 평가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직업교육-자격-노동시장의 인력수요간 연계체제 구축		

직업교육 실행은 크게 인적자원양성, 인적자원활용, 인프라로 영역을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인적자원양성’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 역량을 개발하는 활동관련 영역, ‘인적자원활용’은 양성된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보상체계와 근무조건 개선 등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활용하는 활동과 관련된 영역, ‘인프라’는 인적자원양성·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활동과 관련된 영역을 가리킨다. 각 실행영역별 기본방향은 <표 3>과 같다.

<표 3> 직업교육 실행영역별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직업교육실행영역		기 본 방 향	
양성	직업 교육목표	·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모든 사람을 위한 직업교육	· 국민의 직업기초능력 함양 · 평생직업교육 실현
	직업 교육과정	· 직업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 산업인력 수요의 전망과 취업전망을 고려한 직업교육과정	· 긍정적 직업윤리 함양 · 안전의식 교육 강화
	직업 교육방법	· 현장성 있는 학교 직업교육 ·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의 연계 · 개인차를 고려한 직업교육 · 국제협력의 활성화	· 계속교육기회의 확대 ·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 · 여성 직업교육 활성화
활용	인증 · 자격	· 직업능력평가인정제도의 체계화 ·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의 선행학습 인정
	진로지도 · 배치	· 국민 진로교육 강화 · 학교 진로지도와 직업안정서비스의 연계	· 개인의 평생 경력관리 지원체제 구축
인프라	직업교육조 직체제	·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참여(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 교원의 현장직무능력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 강화	·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학사운영 보장 ·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 있는 장·단기 직업교육계획
	시설·재정· 책무성	·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 재정배분의 형평성	· 재정운영의 자율성 · 재정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책무성 평가
	직업교육연구 · 정보	· 직업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 학습·진로·고용정보망의 통합적 유통체제 구축	· 국가표준직무 · 산학간 지식기술 공유 확산

## 2. 교육·인적자원 관련 법제정비의 기본원리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발전의 과제들은 입법과정을 거쳐서 법령으로 제정된 후 집행되는 것이 교육에서의 법치주의의 원리이며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법률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이나 개정의 방안을 모색할 때나 새로운 정책 안을 법률로 제정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리는 타당성, 실효성, 안정성 그리고 체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강인수, 2001).

직업교육법제는 ①인적자원관련 법제가 규범적 측면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교육관련 조항의 정신에 적합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의무무상성 등의 가치가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관련 조항의 정신에 따라 관계당사자의 교육권, 학교교육의 자율성, 교육의 분권화를 보장하도록 교육의

민주화 정신이 구현되어야 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논리성, 개인과 사회전체이익의 조화를 위한 교육의 책무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밖에 국가적 차원의 각종 지원활동에 따른 명확한 책무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②소관사항의 원리, 특별법우선의 원리, 후법우선의 원리 등의 실효성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법이 아무리 규범 의미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결여하게 되면 그 법은 효력이 없어 존재가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의 강요성과 조성적 측면의 형식을 분명히 갖추어야 한다. 특수법으로서의 교육법제는 그 성격상 조성적 측면이 강하나 교육관계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성립·변경시키는 강요성도 있다. 다분히 선언적이거나 훈시적인 법률규정은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어 사문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령은 강요성과 조성법규의 성격, 형식, 기능을 분명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③시대에 따라 원활하고 유연하게 적용, 해석될 수 있는 탄력적인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법률서의 목적과 진보의 동향과의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 따라서 법령의 정비에 있어서는 현행 법령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과 신뢰를 가능한 한 존중하는 입법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실질내용에 있어서 개개 법률 및 규정상호간에 종횡으로 연결되어 한 개의 유기적 종합체를 형성하므로 논리적으로 통일 정비된 체계를 이루어야한다. 구체적으로 상·하위 법률의 체계성, 법률간 내용의 상호관련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법령내용의 중복성이나 법의 흠결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타당성, 실효성, 안정성, 체계성 및 강요성 내지 조성적 측면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 관련 법령은 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민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갖추어야하며, 이러한 민주성, 전문성, 효율성이 또한 교육법제 정비의 준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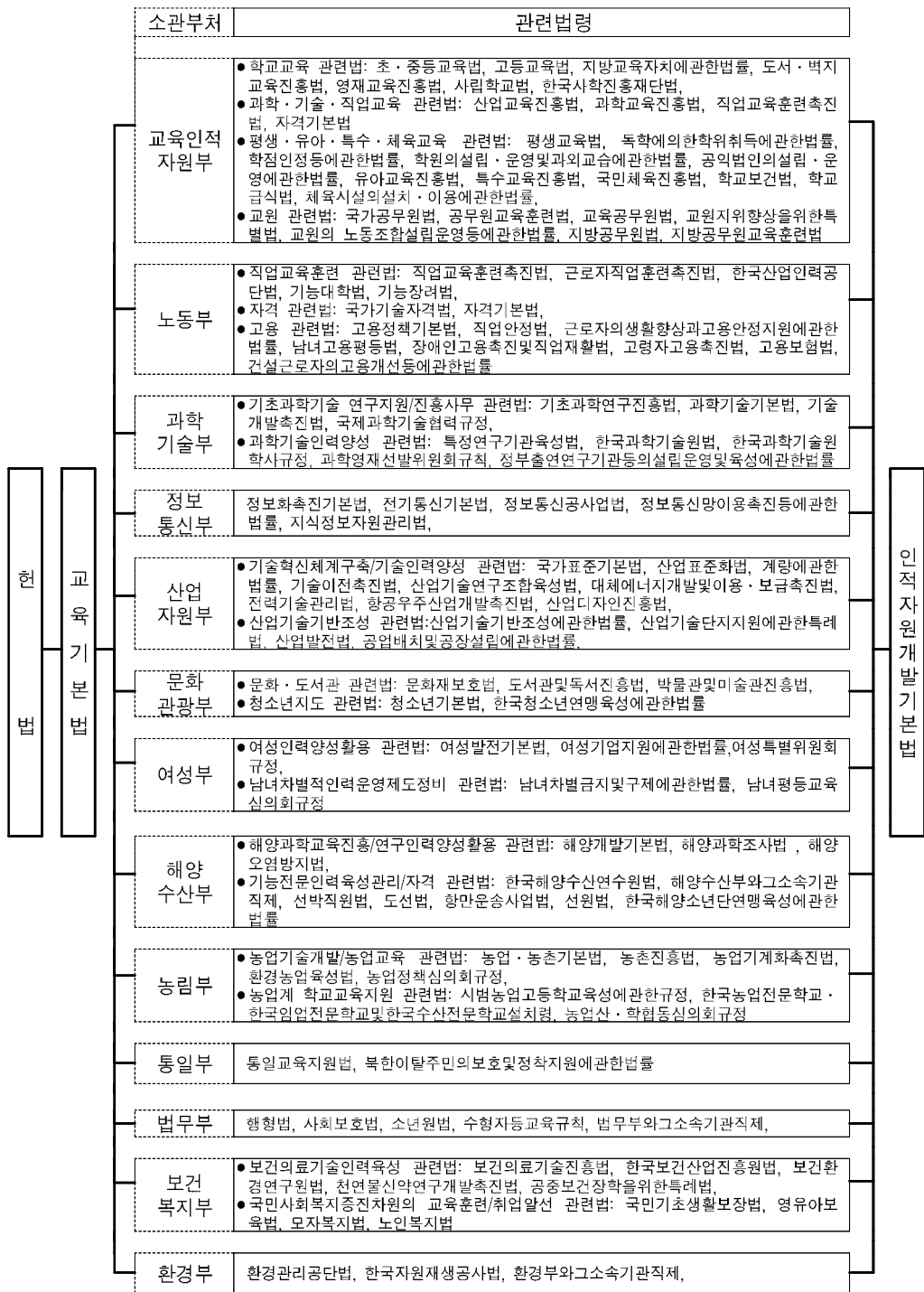
### Ⅲ. 교육·인적자원관련 직업교육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법령의 체계는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준 헌법적 성격을 가진 교육기본법아래 각 영역의 관련

법령이 있다. 각 부처별 소관 교육·인적자원개발관련 법령 체계를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교육·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직업교육 법령에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등이 있다. 각 법령은 제정당시의 사회적 정황에 맞는 입법취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지만, 이후 사회변화에 따라 적절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일부 타당성, 실효성, 안정성, 체계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2] 교육·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체계

## 1. 헌법과 교육기본법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직업교육법제 정비의 타당성의 근거이다. 이 두법은 다른 직업교육 관련법들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므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법에서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고찰하였다.

헌법에서는 여러 조항에 걸쳐 직업교육의 기본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전문과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규정, 제 11조 평등권 규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규정, 제31조 교육기본권 규정, 제24조 인간다운 생활권 규정 등은 직업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관계법의 기본법으로 1997년 종전의 교육법을 대신하는 법으로 제정되었다. 교육기본법에서 직접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그 원칙을 선언한 규정으로는 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를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제2조 (교육이념), 제3조 (학습권),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제5조 (교육의 자주성등),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제7조 (교육재정), 제 8조 (의무교육), 제9조 (학교교육), 제10조 (사회교육), 제11조 (학교등의 설립), 제12조 (학습자), 제13조 (보호자), 제14조 (교원), 제15조 (교원단체), 제16조 (학교등의 설립·경영자),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제18조 (특수교육), 제19조 (영재교육), 제20조 (유아교육), 제22조 (과학·기술교육),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제25조 (사학의 육성),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28조 (장학제도등), 제29조 (국제교육) 등에서 직업교육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있다.

## 2. 초·중등교육법

종전의 교육법이 그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의 교육여건에 부합하지 못하며, 각급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으로 전

면 개정됨에 따라 교육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 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97년 제정되었다. 초·중등 교육법은 직업교육이 초·중등교육의 중요한 교육활동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모든 조항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등에 관한 부분, 제55조 특수학교의 교육목적관련 부분, 제56조 전공과의 설치에 관한 부분 등은 직업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어디에도 고등학교 교육기관 중에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현재 다양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형태중의 하나인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의 지원근거가 없었다(박태준, 2001). 그리고 정규교육기관의 하나로서 초·중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 교육 기능 수행 규정이 없었고(이정표, 고희원, 2001),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중에 '전국민의 기본역량 강화'라는 정책 영역을 통해 진로교육의 강화를 세부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전재경 외, 2001)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3.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1997년 고등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제정되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제2조, 제8조, 제30조, 제31조, 제37~39조, 제40조, 제47~59조 등에서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목적, 수업연한, 교과목이수, 교육과정, 교육방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열린교육이 실현되기 위해 전문대학 교육대상자의 다양화의 위한 고등교육법 입학자격 상의 여러 가지 걸림돌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대졸자 전형, 산업체 위탁, 시간제 등록,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의 도입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정규과정의 입학 정원과 정원의 전형 및 시간제 학생이 상호 환산할 수 있는 대학 정원 개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밖에 전문대학의 모집단위에 규정, 학기운영에 대한 규정, 전과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개정과 복수전공·부전공에 대한 요구와 전공심화 과정의 기본학제화 요구를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장원섭, 김철희, 2001; 정지선, 김호동, 2001; 김환식, 나승일, 2001; 정태화 외, 2000; 정태화, 이병준, 1999; 강성원 외, 1999).

#### 4. 산업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양성에 필요한 산업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1963년 9월 제정·공포된 후 지금까지 총 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공유·확산을 위한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산업교육진흥법의 개정법률안인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등의촉진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켰다.

산업교육진흥법은 실질적인 직업교육에 대한 핵심 법령의 역할을 해 왔으나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산업인력의 양성’에만 그 목적을 국한하고 있으면서 최근의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교육에 대한 정의와 목적 그리고 산업자문 규정의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과 더불어 실효성이 없는 실험·실습시설과 실험·실습비 관련 규정과 산업교육의 자격·정원·대우에 관한 규정 등은 문제가 있었고,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제작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나승일 외, 1999; 나승일 외, 2000).

#### 5.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1996년 2월 발표된 신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3차 교육개혁안을 기초로 1997년 3월 제정·공포되었다. 소위 2·9 교육개혁으로 불리는 신 직업교육체제 개혁안은 직업교육을 ‘국민이면 누구나 받는 교육, 평생에 걸

친 교육'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평생직업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주요 의의가 있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이러한 직업교육 개혁을 법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법을 개편하고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연계, 산학협동의 촉진, 평가,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직업교육 개혁을 전체적으로 뒷받침하고 각 직업교육기관간 공동사업형태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종래 교육부와 노동부가 각각 따로 운영하여 왔던 직업교육(산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며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전문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효력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먼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목적 및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의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볼 때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지방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관련규정은 실효성이 유명무실하고(장석민 외, 1998). 산학협동 관련규정의 체계성 측면의 문제점이 있었다(정태화, 1999).

## 6.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은 급변하는 산업 및 직업세계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격 수요가 요구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자격제도를 포함한 인력개발 체제를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과, 국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민간자격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1997년 3월 총 5장 37조로 제정되었다. 기본적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과 함께 직업교육 3법의 하나로 제정되었다.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법제로서의 자격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격제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97년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 제정한 자격기본법은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의 바람직한 개입 방식이라든지 자격과 학교교육간의 관계, 자격기본법에서 포괄하는 자격의 범위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격제도가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해

주는 인적자본의 지표로서 기능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로서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의 큰 틀을 수립하고 자격의 관리·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그리고 부처간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신명훈 외, 1997; 김현수 외, 2001).

## 7. 평생교육법

교육인적자원부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및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날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틀의 법령을 마련하고, 교육공급자 중심의 닫힌 사회교육체제를 수요자(학습자)중심의 열린 평생학습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공포하였다.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적 성격을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관계법령 등을 지원·육성하는 모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총 5장 32조로 되어 있다. 평생교육법에서 구체적으로 직업교육 관련된 조항은 제7조의 직장인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21조의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제25조에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 해당된다.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상의 문제점으로는 평생교육법상의 개념규정의 한계성, 평생교육 설치·운영상 기준에 관한 기준 부재 문제, 평생교육시설 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부적절성 문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 체제 보장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김기홍, 이현청, 2001).

## IV. 직업교육법제 정비방안

### 1. 직업교육 법제정비 기본방향

직업교육 법제가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고, 교육·인적자원관련 법제정비의 기본 원리에 맞게 정비되어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업교육과 관련한 법제의 입법적 기본을 이루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직업교육관련 이념을 추구하여야 하고, 직업교육 당면과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직업교육법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외국직업법제의 동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 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는 단지 직업 그 자체를 선택할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그 자체의 자유”, 곧 “직업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권영성, 1996). 따라서 이 자유에는 선택한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그만둘 자유까지 포함된다. 직업 그 자체를 선택하는 자유는 다시 직종 결정의 자유와 전직의 자유, 직업교육기관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직업을 선택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는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이기에 헌법 제31조의 조문들은 이것을 직업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모두 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구체적으로 결부된다고 볼 것이다. 즉, 이 조문 제1항 상의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뜻하는 것이 되며, 모든 국민은 국가에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상의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직업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그 이상의 직업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제3항에 의하여 이러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제5항에 의하여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역시 같은 조의 제4항에 의하여 그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이러한 원칙들이 현실적으로 구현되도록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직업교육법제는 이러한 헌법적 배경 하에 형성된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직업의 자유 및 그것을 실효

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 나. 교육기본법 제21조상의 직업교육의 원칙 구현

교육기본법 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직접적으로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그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직업교육의 대상이 전 국민이 되어야 하고 교육의 내용은 취업 및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적 차원에서의 직업교육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법제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법령들은 교육기본법의 이러한 취지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직업교육의 당면과제 해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직업교육이 직면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법제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직업교육의 당면 과제로 국민의 직업기초능력 함양, 국민 진로교육 강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강화, 전문대학·대학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의 연계강화, 성인직업교육 기회 확충, 여성과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제고,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력양성 강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국제협력의 활성화, 벤처창업교육의 활성화, 서비스산업·정보통신·문화산업 분야 교육훈련 강화, 민간직업교육 산업의 육성, 민간기업의 인적자원 고용·관리체제 개선, 근로자의 지속적 자기능력개발체제 구축,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유도,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제고,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직업능력평가인정제도의 체계화, 학교 진로·직업 지도와 직업안정 서비스의 연계, 교육계좌제와 같은 개인의 평생 경력관리 지원체제 구축, 국가표준직무개발, 직업교육의 성과측정 및 책무성 평가, 학습·진로·고용정보망의 통합적 유통체제 구축, 교원의 현장직무능력 제고, 산학간 지식기술 공유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기능 강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체제 개선, 직업교육 정책 기반 확대 등이 해결되도록 직업교육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강무섭 외, 1999; 교육부, 2000; 교육부·노동부, 1999; 김태기, 2001; 대한민국정부, 2001; 양병



찬, 2001; 이무근, 2002; 이정표 외, 2000; 이종성 외, 1997; 장석민 외, 1999; 정우현 외, 1998; 정철영 외, 2000; 정철영, 2001; 정태화 외, 2000).

#### 라. 직업교육법제의 실효성 확보

법제정비는 입법적 타당성외에도 실제 직업교육관련 당사자와 직업교육 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직업교육법제사를 보면 관련 법령들은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혹 그 후에 만들어진 법령의 경우에도 이 교육기본법상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 이유는 교육기본법이 기본법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그것에 상응하는 지위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만큼 차체에 직업교육 관련 법령들이 이러한 원칙을 반영한 정도를 분석해보고, 문제가 있는 법령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법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반의 제도적 지원 장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부수적 지원 장치들이 실천 가능하도록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마. 외국 직업교육 법제의 동향 반영

선진국은 물론 발달단계를 비슷한 외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 및 그 시사점이 적절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새로운 직업교육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하여 직업교육과 관련된 법적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직업교육관련 법적 지원제도의 체제를 정비하고, 산·학·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적·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운영을 위한 자금 기반 조성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일에 기초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산업체와 학교간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을 규정하고, 급속한 경제사회의 변화에 요구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법규와 시설을 제정하고, 개방화·다양화·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체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우리나라 직업교육법제 정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나승일 외, 1999).

## 2. 직업교육법제 정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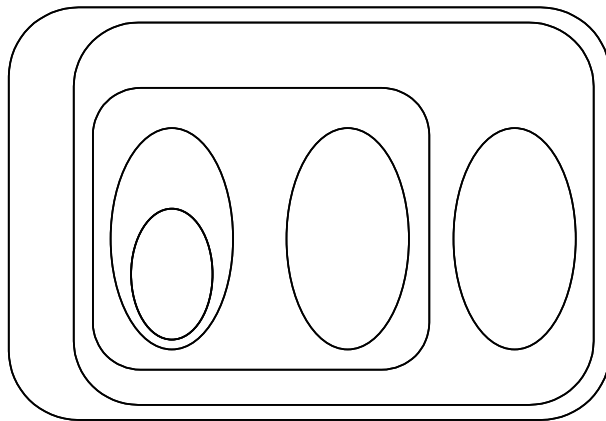
### 가. 법제형식 측면

법제 형식적 측면에서는 여러 직업교육관련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업교육 법률 용어의 상호관계가 규명되어야 하고, 직업교육법령 상호간의 체계화, 부처별 직업교육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1) 직업교육관련 법률용어 정비

교육기본법상의 직업교육, 인적자원개발기본법상의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의 직업교육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교육법의 산업교육, 진로지도, 직업교육학상의 실업교육, 실과교육 등의 개념들이 그 분야 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을 주고 있다. 각 용어간의 상호관계를 법률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해석에 비추어보면 [그림 3]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으로 교육기본법의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등 모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한 기본법으로서 모든 부처의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법령의 기본법이라는 취지가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직업에 관한 모든 교육활동 형태를 직업교육으로 보도록 하는 직업교육 용어 본래의 포괄적 의미는 다시 되 새길 필요가 있다.



[그림 3] 현행 법령상의 직업교육 관련 용어간의 관계

2) 직업교육법제 체계화

직업교육법제를 헌법, 교육기본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평생교육법으로 한정하였을 때 이들 상호간의 위계관계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직업교육법령간의 상호관계

여기서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기본법이라는 지위를 가짐으로서 교육기본법 및 여타 법령과 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헌법 제10조상의 국민과 국가 양자의 헌법관계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해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헌법 제10조는 국민과 국가가 어떤 법 관계가 있는가와 관련해서 가장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조문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헌법은 국민과 그 국민의 인권보장이 주가 되고, 국가와 그가 지는 의무는 인권보장의 목적에 종속하는 관계에 선다는 점을 규정할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가가 어떤 법을 제정할 때나 그것을 시행할 때, 그 목적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지닌다는 면에서 최근에 정부입법으로 제정된 인적자원개발법의 위상은 헌법과 관련 교육법의 전체 체계 속에서 그 위상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국가목적의 사업을 규정한 법으로써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보다 현실적으로 의미 있게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및 제반교육법과의 관계에서 그 법률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가진 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헌법의 교육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은 ‘교육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범정부적 조직·운영관련 지원체제와 관련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 3) 부처별 직업교육관련 법제 정비

직업교육법제의 정비는 궁극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법제의 정비로서만 끝날 수는 없는 문제다. 선행연구 및 법령 검토결과 부처간 직업교육 관련법제가 상호 중복성 측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관련 법령들의 효율성 및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공무원 대상 교육의 중복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정이 산재하여 있다. 즉 각 부처 및 소속기관 직제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소관의 법령 역시 동일대상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중복 조항을 두고 있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파견근무 등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조항을 하나의 법령으로 집중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각 부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의 중복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인, 군인, 고령자, 재소자 등 특수계층의 경우 그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이 중복적으로 산재되어 있다. 이는 각 부처간의 관점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수계층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노동부 소관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같은 사회보장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대상에 대한 재활교육 및 생활안정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이 소관하고 직업교육에 관한 사

항은 부처 상호간 협조체제 명시되도록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이는 농·림·어업인 및 여성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한편 국방부의 경우 하사관 이상의 직업훈련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대 후 취업을 해야 하는 일반 사병들까지 확대하고 그 교육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③근로자 직업교육에 대한 모호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 소관의 법령들이 대상으로 하는 선원, 항만근로자, 여성부 소관 법령이 대상으로 하는 여성근로자, 환경부 소관 법령이 대상으로 하는 민간기술인력 및 환경관리요원,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연구인력 등 부처간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즉, 해당 부처 근로자에 대한 사항이 해당 부처의 편의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동부와의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상호 중복에 의한 법 집행의 비효율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④각 부처 소속기관 인력양성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림부 소속기관인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임업전문학교, 한국수산전문학교, 과학기술부의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문화관광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방부의 국방대학교, 공군기술고등학교, 노동부의 기능대학 등 해당 부처가 관장하는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각각의 법령들이 산재되어 있어, 자칫 각 소속기관들의 학사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능대학, 국방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관한 법령은 고등교육법으로, 공군기술고등학교 등에 관한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으로 통합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나. 법제내용 측면

법제내용 측면에서의 정비방안은 인적자원양성, 인적자원활용, 인프라로 구분하여 제시될 수 있다.

##### 1) 인적자원양성

인적자원양성과 관련하여 직업교육법제는 교육목표(이념), 교육과정, 교육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원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먼저, 직업교육목표는 직업교육의 이념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것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여야 한다(이무근, 1999). 이를 위해 직업교육은 ①평생학습의 이념 하에 실시되어

야 하고, ②각 개인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신체적 특성, 요구, 가치관 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며 취업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③특수한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의 교육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직업교육과정은 ①직업군 분석법에 의하여 개발됨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사한 상황이나 조건을 개발 적용해야 하고, ②직업기초능력의 양성을 위해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통합적 운영이 요구된다. 직업교육방법과 관련하여 ①직업 능력이 실천을 통한 학습, 즉 실험과 실습을 통하여 개발되도록 해야 하고, ②직업교육의 교수학습은 모듈수업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③직업교육은 산학협동 교육의 일환으로 산업현장에서의 현장 실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방법의 실현을 위해서 직업교육교사 교육 측면에서 ④직업교사는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전공관련 산업현장의 직무에 대한 능력, 교육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고루 갖추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인적자원양성이 되기 위해 직업교육법제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방법 영역별로 <표 4>와 같이 정비되어야 한다.

<표 4> 인적자원양성 영역에서의 직업교육법제 정비 내용

영역	정비 내용	관련 법령 및 조항
교육 목표	▪ 직업교육의 일반적 목적 진술에 있어 국가적 필요성 뿐만이 아닌 '개인의 역할 및 의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내용 추가	산업교육진흥법 제1조
	▪ 직업교육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	산업교육진흥법 제2조
	▪ 평생직업교육 실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의1
	▪ 직업기초교육에 대한 강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의 1
교육 과정	▪ 전문대학 목표를 인력양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과정·내용 지향적으로 진술	고등교육법 제47조
	▪ 실업계 고교의 자율적 체제운영과 교과과정 다양화 근거 마련, 직업교육의 경우 학과단위보다는 계열, 전공중심의 운영이 요구	초·중등교육법 제48조
	▪ 직업교육과정을 개발시 수요자/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좀더 구체적인 기본원리 마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2조
	▪ 직업교육훈련생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현장경험 프로그램 제공되도록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편성	산업교육진흥법 조항신설
교육 방법	▪ 특약에 의한 학과 설치	산업교육진흥법 조항신설
	▪ 산학협력 대학의 범위를 확대	고등교육법 제39조
	▪ 산학협력계약 및 산학협력단 설치	산업교육진흥법 조항신설
	▪ 산학협동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타당한 분류체계 제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의 5
	▪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로 장애인이나 여성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 보장에 대해 구체적 제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0조
	▪ 산업교육기관과 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사항 명시	산업교육진흥법 조항신설
▪ 고용주의 의무/훈련생의 의무와 관련한 규정	산업교육진흥법 조항신설	
▪ 산업체의 학생에 대한 장학계약	산업교육진흥법 조항신설	

2) 인적자원활용

양성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직업교육은 기본적으로 ①평생직업교육의 체제하에서 종적으로 상하 직업교육기관간에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횡적으로 학교와 사회교육기관간에 상호 협조와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기능이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②자격제도가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해 주는 인적자본의 지표로서 기능하도록 하여 성공적 인력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제도의 큰 틀을 수립하고 자격의 관리·운영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③의무교육단계에서의 직업진로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인적자원활용방안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법제는 인증·자격, 진로지도·배치 영역별로 <표 5>와 같이 정비되어야 한다.

<표 5> 인적자원활용 영역에서의 직업교육법제 정비 내용

영역	정비 내용	관련 법령 및 조항	
인증·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인증제도의 대상의 확대: 학생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적용</li> <li>직업능력인증제도 실행을 위한 명확한 기준/방안/절차의 구체적 실행내용 규정</li> </ul>	교육기본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력인정 학교형태에 평생교육시설을 포함</li> </ul>	초·중등교육법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기업의 운영을 실습으로 인정</li> </ul>	고등교육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및 직업능력인증제까지 포괄하는 통합자격</li> </ul>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 범위 확대: 인문·사회 및 서비스 분야까지</li> <li>민간이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의 종류를 연차별로 확대 명시</li> <li>직무능력표준 도입: 자격/학력의 호환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기준/자격검정기준/자격의 학점인정을 연계</li> </ul>		제1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따른 해당 학점을 이수자에 대해 일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또는 일정 범위의 시험과목 면제</li> </ul>		제5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능력인증제의 명확한 기준, 방안, 및 절차 마련</li> </ul>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허 전문직의 입직후 국제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계속교육' 이수규정 마련</li> </ul>	제5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인 민간자격 사항변경시, 응시자격, 검정기준, 검정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규정을 마련</li> </ul>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인자격 명칭에 대하여 독점 규정 개선</li> </ul>	제30조4	
진로지도·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에게 정확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미래지향적인 진로교육을 실시 규정 설정</li> </ul>	초·중등교육법 제4장 1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로지도를 진흥을 위한 좀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li> </ul>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의 평생경력관리 지원체제 구축</li> </ul>	교육기본법/산업교육진흥법	

3) 인프라

인적자원양성과 인적자원활용을 원활히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직업교육 인프라를 위해서는 ①직업교육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정부규제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②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고, ③직업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직업교육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법제는 교육조직 체계, 시설·재정·책무성, 연구·정보 등의 영역별로 <표 6>과 같이 정비되어야 한다.



〈표 6〉 인프라 영역에서의 직업교육법제 정비 내용

영역	정비 내용	관련 법령 및 조항	
교육 조직 체계	• 정규교육기관의 평생 직업교육훈련 기능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학교체제를 구축, 선발 및 학사운영 관리체제 재편	초·중등교육법 제1절	
	• 중등 직업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실업계고등학교를 별도의 학교유형으로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6절	
	• 전문대학 체제 안에서 단·중·장기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운영	고등교육법 제4절 평생교육법	
	• 각기 분리되어 있는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기술대학' 관련법령의 통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수정 또는 신설	평생교육법 제21, 23조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직업교육 역량을 강화(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의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추진 / 대학의 산업체·직업훈련기관·지역사회 등과 수평적 연계교육체제를 구축·운영 / 대학의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등과 수직적 연계 교육체계 구축·운영	고등교육법 제4장	
	• 고등교육기관에 성인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를 획기적 확충	고등교육법 제21조	
	• 정원의 전형으로 시간제 등록인원 규정의 확대 및 대학 자율권 부여	고등교육법 제29조	
	• 대학의 다학기제 운영	고등교육법 제31조	
	• 전문대학 입학자격 기준의 고졸 학력을 폭넓게 해석하여 전문대학 교육대상자를 다양화	고등교육법 제33조	
	• 기능대학의 과정의 구분을 좀더 다양화	평생교육법 제4조	
	• 기능대학 수업연한을 2년 내지 6년으로 법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학위 법정화	평생교육법 제7, 9, 11조	
	• 평생교육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원조항 대한 보완 및 수정	평생교육법 제10조	
	• 평생교육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지역평생교육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추가	평생교육법 제24조	
	• 노인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평생교육법 제27조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평생교육법 제27조	
	• 평생교육시설 분류의 기준에 관한 내용 제시 규정 • 군내에 평생교육기회를 확대	평생교육법 제4장	
	• 민간단체들간의 국제협력에 대한 국가적인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 보완	산업교육진흥법 제24조	
	• 교원의 현장직무능력 제고 및 산업자문에 대한 인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3조 산업교육진흥법 제12조	
	시설 · 재정 · 책임성	• 직업교육훈련협의회와 기능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이양,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기능분담 • 직업교육훈련협의회와 지방특별행정기관(노동청, 중소기업청, 교육청)간의 협력활동 근거 마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장
		• 직업교육 구성원의 자발적 네트워크 참가와 수평적인 관계 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 4,8,13,14조
• 행정관서 위주의 직업교육훈련체계로 인한 지나친 위계조직 개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3,4조	
• 직업교육훈련 위탁상에 중복접촉의 가능성 배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6조	
• 현장실습대상 산업체에 단위학교에서 설립·운영하는 학교기업 포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	
• 애매모호한(협조관계인지 강제관계인지) 협조관계를 상호의존성 내지 상호보완성을 명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2	
• 직업교육훈련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으로 전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9조	
•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학교기업 판매수입의 일정부분'을 포함 • 학교기업 세입·세출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2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강화(평생교육시설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평생교육시설 평가제도 도입, 평생교육시설 보고와 감사)		평생교육법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평생학습진흥과 평생학습기회확대를 위한 평생교육기금 조성 • 민간자본의 평생교육관련 교육투자 촉진책 마련		평생교육법	
연구 · 정보	•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공동실습센터를 산업교육기관(실고 및 전문대학)소속 학생이 활용하도록 규정	산업교육진흥법 제4장	
	• 직업교육 실험·실습시설에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산학연구단지 등을 반영	산업교육진흥법 제10조	
	• 신기기의 공급과 함께 각급 산업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실험·실습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 시설·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평가·인증하는 방안을 강구	산업교육진흥법 제13조	
	• 전문대학 재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4조	
• 부처별 산재되어 있는 공공 직업훈련기관 간 인적·물적 교류 및 정보공유등 연계 운영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장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직업교육법제정비는 기본적으로 ①헌법상의 직업 및 직업교육과 관련된 이념을 반영하고, ②교육기본법상의 직업교육의 원칙을 구현하고, ③직업교육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④직업교육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⑤외국 직업교육 법제의 동향을 반영하도록 방향지워져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제형식과 내용이 정비되어야 한다. 형식 측면에서는 ①여러 직업교육관련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업교육 법률용어의 상호관계가 규명되고, ②직업교육법령간의 상호체계화가 이루어지고, ③부처별 직업교육관련 법제 중복성이 지양되고, 이들간의 효율성, 체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내용 측면에서는 ①인적자원양성 측면에서는 교육대상과 내용이 좀더 확대되고, 일현장의 현실이 좀더 반영이 되고, 실천을 통한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관련 조항의 수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 ②인적자원활용 측면에서는 자격인정 대상과 내용이 확대되고, 학교현장 진로지도를 위한 좀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 수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 ③인프라 측면에서는 다양한 대상에 위한 다양한 유형의 직업교육기회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체제가 정비되고,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 촉진과 책무성을 확보하며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직업교육기관간 연구·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제언

이 연구 수행과정과 결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법제 발전과 후속 연구 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직업교육법(가칭) 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직업교육법제 정비방안의 근본취지를 살리면서, 산업교육진흥법을 발전적으로 전면 개정하는 직업교육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인 직업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직업교육법과 같은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령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으로 직업교육 정책집행과 법제정비는 직업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탈규제화·자율화는 직업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

육·훈련의 수월성과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는 관건이므로, 지역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와 이와 관련한 교과서, 교재 채택의 자율화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단위교육기관의 자율성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산학협력에 관한 규정을 모아 개별적인 법령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하면서 무리하게 기존의 산업교육진흥법의 기본 성격을 변형시키고 있는데, 이보다는 추후에 일본의 ‘대학등에있어서의기술에관한연구성과의민간산업자에게로의이전의촉진에관한법률’ 또는 미국의 산학연계법(STWOA)과 같은 산학협력에 관한 개별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조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차후 직업교육법제의 정비 요구 수렴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중장기적 계획에 의거 법제정비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요구조사를 3-4년 단위로 실시하여 이를 법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절한 요구조사 없이 관련 담당공무원들에 의해 그때 그때의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령 개정 작업을 시급히 처리해버리는 점을 시정하여, 추후에는 법제정비를 위한 좀더 체계적인 요구수렴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법령에 기초한 정책의 형성,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직업교육법령상의 규정 등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비 차원의 작업과 함께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 정책에 대해 추후 관리를 좀더 명확히 확인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무섭 외(1999). 실업계 고등학교 종합대책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성원 외(1999).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인수(1999). 교육개혁의 법적 쟁점과 과제. 1999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_\_\_\_\_(2001). 교육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 2001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논문.
- 교육부(2000).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한 인적자원 개발 전략.
- 교육인적자원부(2002). 국가인적자원정책의 배경과 주요과제: 정책설명자료.
- 권영성(1996).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기홍, 이현정(2001).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재식(1998). 학교와 산업체간 지식/기술 확산·공유를 위한 산학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 김태기 외(2000). 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NHRD 비전과 추진전략 연구팀.
- 김현수, 박종성(2001). 민간자격 운영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환식, 나승일(2001).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홍주 외(2001). 교육인적자원개발정책을 위한 교육 및 관련법제 개혁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나승일(1998). “우리나라 직업교육행정 조직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0(4), pp.88-112.
- \_\_\_\_\_(2001). 직업교육 패러다임의 이해. 부산시교육청 중등학교 직업교육 직무연수 교재.
- \_\_\_\_ 외(1999). 산업인력구조 고도화 지원촉진법 제정방안 연구. 교육부
- 대한민국정부(2001).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
- 박재운(1996). “직업교육 촉진을 위한 입법방안”. 『교육법학연구』, 8, pp.79-92.
- 박태준(2001).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강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백성준 외(2001).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전략.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명훈 외(1997). 자격제도의 종합적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 신익현 외(2000). 국가인적자원개발 주요정책 진단, 분석 및 개발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양병찬(2001). 전문대학 평생교육체제화 전략. 제3회 전문대학교육정책포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문대학교육의 개혁 방향.
- 유현숙 외(2001).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재구조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무근(1999). 직업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 (2002).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발전방향. 2002년 직업교육관련 학회 및 단체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외(1999).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일과 학습의 연계체제 구축방안 연구. 교육부.
- 이정표 외(2000). 평생직업교육훈련 종합대책 1.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종성 외(1997).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고등학교 직업교육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석민 외(1999). 산업대학 체제 개편방안 연구. 교육부.
- 장원섭 · 김철희(2001). 직업교육체제 발전 방안: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 연계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재경 외(2001). 교육인적자원 관련 법제 정비 기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교육인적자원부.
- 정기오(2001). 인적자원정책: 개념과 그 이론적 준거의 검토. KEDI교육정책포럼: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정책.
- 정우현 외(1998).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지선 · 김호동(2001). 전문대학 발전방안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철영(2001).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의 방향. 2001년도 한국직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외(2000).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 정책.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태화 외(2000). 전문대학 직업교육 다양화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연구. 교육부.
- 이병준(1999).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허종렬(1995). “헌법과 교육법: 교육법에 헌법 적합성 검토 및 개정방안 연구”. 『한국교육』, 22, pp.79-103.
- 허종렬 외(2002). 교육법상의 규제요소 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Finch, C. R., McGough, R. L.(1982). *Administering and Supervising Occupational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Gray, K.(1999). High school vocational education: Facing an uncertain future. In A. J. Paulter, Jr. (Ed.), *Workforce education: Issues for the new century*(pp. 159-169). Ann Arbor, MI: Prakken.
- Harkins, A. M.(2002). *The future of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n a continuous innovation society*. NCCTE.
- Lynch, R. L.(2000). *New directions for high school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44037).
- Rojewski, J. W.(2002). *Preparing workforce of tomorrow: a conceptual framework fo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NCCTE.
- Stevens, D. W.(2001). *21st century accountability: Perkins III and WIA*. National Dissemination Center fo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

## ABSTRACT

---

### Alternatives to Restructure the Vocational Education Laws related to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	Na, Seung-il
The Univ. of Suwon	Kang, In-su
Seoul National Univ. Jyung,	Chyul-young
Seoul National Univ. of Education	Hur, Jong-ryul
Seoul National Univ.	Ma, Sang-jin
Seoul National Univ.	Kim, Kang-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alternatives to restructure the vocational education laws related to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the purpose, researchers carried out literature review about vocational education model, laws and their related reports, comparatively analyzed the specific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ve cases, held a public hearing on the interim reports and validated the strategies for consolidating the vocational education law with the advices of vocational education expert panel.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e vocational education model to promote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legal system consolidation principles on education and NHRD, and five basic orientations for the consolidation and several specific consolidating strategies in terms of form and contents.

The basic orientations were as follows: ①to reflect vo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related doctrines of the constitution, ②to embody vocational education principles of the education organic law, ③to solve urgent tasks of vocational education, ④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vocational education legal system, ⑤to implicate foreign countries' trends of vocational education laws. Specific consolidating strategies in terms of law form were ①to clear up the relationship among the vocational education related terms, ②to systemize the vocational education laws, ③to consolidate the other ministries' vocational education laws. Specific consolidating strategies in terms of law contents were as follows: ①as of human resource education and training, to expand the scope of subject and contents, to reflect the workplace's current needs, and to enhance the instructional method based on exercise, ②as of human resource application, to enlarge the scope of the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 and to systematically t vocational guidance in schools, ③as of infrastructure, to expand the opportunities of vocational education, to promote the investment for vocational education, to secure the accountability, and to activate the exchange among vocational institutes.

Additionally, this study recommended some perspectives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education legal system and its related future works.